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08
----------	-------

발의연월일 : 2025. 6. 17.

발 의 자 : 민형배 · 이개호 · 김현정
소병훈 · 정동영 · 김동아
박지원 · 안도걸 · 최혁진
김성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법적 주체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이자 공동체 주인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통상 국가의 구성원이자 통치의 대상으로 이해되며, 국가의 구속을 받는 객체로서의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 ‘시민’은 사회적 교양과 책임의식을 갖춘 자율적 참여자로서, 자신이 민주공화국의 구성 주체이며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실제 교과서에서도 ‘민주국민’이 아니라 ‘민주시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꾸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등).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민”을 각각 “시민”으로 한다.

제2조제9호가목 중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다.

제3조 중 “국민”을 각각 “시민”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민”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국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민”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체육진흥”을 “시민체육진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민체육진흥을”을 “시민체육진흥을”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시민체육진흥기금의 시민체육진흥계

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을 “시민체육진흥기금의 시민”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시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시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민”을 “시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시민체육진흥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시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각각 “시민체육진흥계정”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시민체육진흥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을 “시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시민체육진흥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시민체육진흥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시민체육진흥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각각 “시민체육진흥계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민”을 “시민”으로,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시민체육진흥계정”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 “국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시민체육진흥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시민체육진흥계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을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은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각각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시민체육진흥계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중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으로,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시민체육진흥계정”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시민체육진흥계정”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을 “시민”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시민체육진흥계정”으로 한다.

제42조 중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계정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 시민체육진흥기금 및 시민체육진흥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을 “서울올림픽시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③ 경륜·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조의2 전단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시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시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시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시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각각 “「시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시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한다.

④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라목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⑥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을 “서울올림픽시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⑦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1호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⑧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1)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국민체육시설”을 “시민체육시설”로 한다.

⑨ 바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⑩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4제1항제2호가목·라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각각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⑪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국민체육기금”을 “시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한다.

⑫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가목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마목 중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시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제14조의4 제목 중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시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한다.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5항제2호나목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국민체육시설”을 “시민체육시설”로 한다.

⑮ 생활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각각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⑯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⑱ 스포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각각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⑲ 스포츠클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각각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⑳ 씨름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5호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

법」”으로 한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③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④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제4호나목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1호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다.

⑥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제4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시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㉓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3호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㉔ 체육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각각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제3조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㉖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시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국민체육진흥법</u>	<u>시민체육진흥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u>국민</u> 체육을 진흥하여 <u>국민</u> 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u>국민</u> 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시민</u> ----- ----- <u>시민</u> ----- ----- ----- ----- <u>시</u> <u>민</u>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9. ----- ----- ----- ----- -----.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장애	가. ----- ----- ----- ----- -----

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u>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u>	----- ----- ----- <u>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u>
나. ~ 아. (생략)	나. ~ 아. (현행과 같음)
10. ~ 12. (생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3조(체육진흥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u>	제3조(체육진흥시책과 권장) -- ----- <u>시민</u> ----- ----- <u>시민</u> ----- ----- --.
제4조(기본시책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u>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u>	제4조(기본시책의 수립 등) ① - ----- <u>시민</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 국가는 <u>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 -- ----- <u>시민</u>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u>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 ----- <u>시민</u> ----- -----

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 ---
-----시민-----

-----.

② -----

---시민-----

-----.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① -----
-----시민-----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용구·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에 따른다.

등) ① -----
시민-----

② -----시민
체육진흥-----

③ -----시민
체육진흥-----

-----서울올림픽
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
----시민체육진흥기금의 시민
체육진흥계정-----

1. ~ 4. (생략) ④ ~ ⑥ (생략)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u>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u>에서 용자받을 때 우대할 수 있으며, 용자받은 자금을 용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생략)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u>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u>,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생략) 제3장 <u>국민체육진흥기금</u>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 다음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u>시민체육진흥기금의 시민</u>----- ----- -----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u>----- ----- ----- -----. ③ (현행과 같음) 제3장 <u>시민체육진흥기금</u>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 -----
---	---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 8. (생략)

9.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한다.

④ (생략)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3. (생략)

-----시민체육진흥기금

1. ~ 8. (현행과 같음)

9. -----시민-----

② -----시민체육진흥계정

-----.

③ 시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시민체육진흥계정-----

-----.

1. ~ 3. (현행과 같음)

4. <u>국민체육진흥계정</u> 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u>시민체육진흥계정</u> -----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올림픽 회장 사업) ① (생략)	제21조(올림픽 회장 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u>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u> 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u>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u>국민체육진흥계정</u>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u>시민체육진흥계정</u> -----
1. <u>국민체육</u>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1. <u>시민</u> -----
2. <u>국민체육시설</u>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2. <u>시민</u>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5. 광고나 그 밖에 <u>국민체육진흥계정</u> 조성을 위한 사업	5. ----- <u>시민체육진흥계정</u> -----
6. ~ 12. (생략)	6. ~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	② -----

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회 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3. (생략)

③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정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

-----시 민 체 육 진 흥 계
정-----

1. -----

---시민체육진흥계정-----

2. · 3. (현행과 같음)

③ -----시 민 체
육진홍계정-----

-----시민체육진흥계정-----

-----시 민 체 육 진 흥
계정-----

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④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일부나 계
정관리기관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
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
정한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1. ~ 6. (생략)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계정관리기
관은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
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
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국
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
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

-----.

④ -----시민-----

시민체육진흥계정-----

-----.

1. ~ 6.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

-----시민-----

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생략)

제22조의3(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 제22조 사업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자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성과의 평가) ① -----

-----시민체육진흥계정-----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시민체육진흥계정-----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시민-----

-----.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운동경기 및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제25조에 따른 수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2) -----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
진흥공단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

---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 -----

② (생 략)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
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
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
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
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제27조(환급금)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
권은 그 지급 개시일부터 1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
성된 환급금은 국민체육진흥계
정에 귀속된다.

제28조(운영비) ① 서울올림픽기
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
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
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
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
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
단-----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환급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민체육진흥계정
-----.

제28조(운영비) ① 서울올림픽기
념시민체육진흥공단-----

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생략)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계획과 수입 지출 예산서를 수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매

-----.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 -----

-----서울올림픽
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
-----.

②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

-----시민체육진흥계
정-----
-----.

제31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

연도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발매가 무효로 된 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그 구매 금액은 국민체육진흥계정에 귀속된다.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

-----.
-----.

②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시민체육진흥계정-----.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 ① -----

-----시민-----

-----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단-----

립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국민체육진흥계정</u> 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 업	2. <u>시민체육진흥계정</u> ----- -----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 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도평 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 체육회, 한국도평방지위원회나 <u>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 단</u>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 ----- ----- ----- ----- ----- ----- <u>서울올림픽기념시민체육진흥공 단</u> ----- -----.